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유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0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

발 의 자: 박유진, 김지향, 박수빈,
박승진, 봉양순, 아이수루,
이원형, 전병주, 한·신,
홍국표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
-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 4항 신설)
- 나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 하도록 함 (안 제11조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근로기준법」
「형법」
「남녀고용평등법」
「민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공표할 수 있다”를 “공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1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시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<u>공표할 수 있다.</u> ② (생략)</p>	<p>제11조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표하여야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 번호

2023100800000002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박유진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8.

회신일 : 2022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) 제4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=186,200천원(연평균 37,24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37,24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4~2028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발생되는 비용은 전문기관 위탁시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접 교육시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중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전직원 대상 유사한 위탁교육 사업을 찾을 수 없어 추계에서 제외
 - 서울시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교육대상 및 교육 성격이 유사한 법정 의무 교육인 폭력예방교육 예산과 동일하다고 전제
 - 다만, 교육콘텐츠 개발비는 2023년 예산에 기편성(15,000천원)되어 있으므로 추계에서 제외

※ 기편성 예산현황 :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

(단위 : 천원)

과목	2023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- 15,000,000원 * 1식	= 15,000
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비용(합계) = 186,200천원(연평균37,240천원)

- 총비용 =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입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		37,240	37,240	37,240	37,240	37,240	186,200
	소계(b)		37,240	37,240	37,240	37,240	37,240	186,200
□ 총 비용(b-a)			37,240	37,240	37,240	37,240	37,240	186,200

○ 직원대상 직장 내 괴롭힘 통합예방교육(본청)
 = [(강사료 × 15회) + (진행비(사무용품비))] × 5년
 = [(360천원 × 15회) + 12,440천원] × 5년
 = 17,840천원 × 5년 = 89,200천원

○ 관리자 대상 직장내 괴롭힘 특별교육
 = [(강사료 × 10회) + (진행비(사무용품비))] × 5년
 = [(360천원 × 10회) + 8,600천원] × 5년
 = 12,200천원 × 5년 = 61,000천원

○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
 = 강사료 × 1회 × 20개소 × 5년
 = 360천원 × 1회 × 20개소 × 5년
 = 7,200천원 × 5년 = 36,000천원

※ 강사료 :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거 전문강사 2시간 기준으로 계산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박지영

☎ 02-2180-7952
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붙임) 2023년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예산현황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직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	= 17,840천원
	- 강사료	= 5,400천원
	- 360,000원*15회	
	- 진행비	= 12,440천원
	- 12,440,000원	
	○ 관리자 대상 폭력예방 특별교육	= 12,200천원
	- 강사료	= 3,600천원
	- 360,000원*10회	
	- 진행비	= 8,600천원
	- 8,600,000원	
	○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	= 7,200천원
	- 강사료	= 7,200천원
	- 360,000원*20개소	
	○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	= 20,000천원
	- e-러닝강좌 개발	= 20,000천원
	- 10,000,000원*2개	
○ 직원 대상 폭력예방 홍보	= 10,000천원	
- 캠페인	= 10,000천원	
- 연4회*2,500,000원		
○ 성희롱·성폭력심의회 운영	= 24,960천원	
- 위원회 참석수당	= 16,200천원	
- 300,000원*9명*6회		
- 조사보고서 전문가 자문비	= 3,000천원	
- 200,000원*1명*15회		
- 외부전문가 조사비	= 4,500천원	
- 300,000원*5회*3명		
- 외부회의실 대관료	= 1,260천원	
- 21,000원*20시간*3회		
○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	= 15,000천원	
- 피해자 지원(법률,심리·의료 지원)	= 15,000천원	
- 1,000,000원*15명		
○ 성희롱성폭력 결정레집 발간	= 6,000천원	
○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발간	= 10,000천원	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○ 직장내 폭력예방 업무추진	= 3,000천원

(2023년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예산서 참조)